

## (4) 기타

## ① 증인 등의 보호

4·3특별법 5조 1항은 「누구든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런 식의 규정은 없어도 상관없는 그야말로 선언적 규정일 뿐이다. 이는 '의문사규명법' 29조 2항을 본받아 「누구든지 제주4·3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② 재심

4·3특별법은 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한 바에 대한 재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주화운동관련자법' 13조를 본받아, 신고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 ③ 의료지원금

4·3특별법 9조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법'은 생활지원금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9조),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한다고 규정한다(8조)<sup>6)</sup>. 이러한 '민주화운동관련자법'과의 균형상 4·3특별법도 의료지원금의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상해를 입은 자와 아무 이유도 없이 공권력에 의해 상해를 입은 자를 굳이 차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6) 제8조(의료지원금)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 ④ 피해배상

4·3특별법에는 가해자 처벌규정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규정도 없다. 결국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오직 희생자만 있을 뿐이다. 이 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폭도가 아니었구나 죽여서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고자 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청산의 원칙<sup>7)</sup>에 어긋난다. 4·3특별법은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규정은 명시하였어야 옳았다고 본다. 정부는 광주문제를 해결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하였고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하였다. 이들 경우와 비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공권력에 의해 학살당한 4·3의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자(慰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4·3의 피해규모가 워낙 엄청나다고 해도 또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어려운 점이 많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있다고 해도, 국가의 입장에서는 웅당 국민이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자 의무이다<sup>8)</sup>.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배상을 사양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하는 문제는 피해자측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요컨대 법을 개정해서 배상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때 배상에는 연좌제에 따른 피해배상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 3.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의 과제는 우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책임자의 단죄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 글은 4·3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향

7) 중대인권침해를 푸는 국제법상의 확립된 원칙으로서 ①진상규명, ②사법처리, ③명예회복, ④피해배상, ⑤정신계승 등 5대 원칙.

8) 양민학살이라는 점에서 4·3과 유사한 대만 2·28사건(1947년)의 문제를 대만정부가 해결하면서 대만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였다. 대만은 「2·28사건 처리 및 보상조례」(1995년)를 제정하였는데 그 법 제1조는 「2·28사건의 보상문제를 처리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진상을 알게 하며 역사적 아픔을 없애고 민족적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특별히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이 조례에 입각하여 희생자 1인당 우리 돈으로 1억8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후 과제에 대해서는 간략히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우선 진상규명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미국의 책임을 정면으로 밝히고 추궁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4·3을 여전히 빨갱이 폭도들의 소행<sup>9)</sup>이라고 보는 데 단히 시대착오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일이다. 레드컴플렉스 내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인권의 차원에서 보도록 유도할 일이라고 본다. 셋째,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한가지 미묘한 문제가 남아 있다. 4·3 당시 在山무장대 이른바 폭도로 불리는 사람들은 200~3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무력으로써 저항하였다는 점 때문에 긍정적 평가가 어렵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자주·민주·통일의 정신마저 훼손시켜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4·3민중항쟁이 보여준 의의는 바로 자주·민주·통일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문사규명법’은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25조). 그러나 대규모 민간인학살을 다루는 4·3특별법은 진상규명·명예회복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상규명 다음으로는 가해책임자에 대한 단죄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단죄의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는 남아공의 ‘화해와 진실위원회’의 예를 따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유대인 학살자를 이 세상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한 예를 따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4. 맺음말

과거청산은 한 국가의 명예와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대규모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과거청산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만일 법률미비로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률을 만들었거나 방치한 자들도 훗날 과거청산의 대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특히 입법부는 다음의 점을 각성하였으면 한다. 법제정·개정권자는 무수히 바뀐 일들

9) 4·19혁명 당시에도 이를 빨갱이의 소행이라고 했고, 5·18항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있을 것이고 4·3특별법은 그 중 작은 일부분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제정·개정의 문제를 유권자로부터 표를 잃지 않을 정도의 관심사항 내지 득표에 유리한 관심사항 정도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규모 민간인 학살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유권자로부터의 득표와 관련지어 생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 <별첨>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진정인, 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제1조 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⑨제8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⑩제9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⑪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⑫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의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⑬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⑭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발 제

### 일본군성노예 : '법적 정의'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향해

김 창 록  
(부산대 법학과)

## 일본군성노예 : '법적 정의'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향해

김 창 록  
(부산대 법학과)

### I. 머리말

2001년 5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교과서 파동'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남북한과 중국 등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4월 3일 일본 정부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반역사적인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강행하면서 그 '전쟁'은 악화일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의 주일대사 소환을 강행하고 재수정 요구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검정제도의 그늘 속에 숨은 채 검정통과를 결정한 인물들로 구성된 '새로운'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선에서 성의를 보이겠다고 맞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연일 규탄집회가 열려 이웃나라의 '국기'를 태우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내정간섭'이라는 불멘소리도 빠져 나오고 있다. 문자 그대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2년에도 그리고 1986년에도 '전쟁'을 치렀다. 그럼에도 왜 또 다시 같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문제의 뿌리를 자르지 않은 채 대충 결만 덮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은 이번의 '전쟁'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이 보인다.

문제의 뿌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가 35년간 한반도를 강점했다는 것이며, 1945년 이후 그 강점에 대한 청산이 옹골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 한일간 과거청산의 미완이라는 뿌리에서 역사를 뒤트는 일본의 우익이라는 흉칙스러운 잎사귀가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그 그늘에서 노령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체된 正義를 찾아 차가운 법정을 향하는 피해자들의 신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강점의 역사를 청산하는 과거청산이 바로 지금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일간의 “정신적 가시”<sup>1)</sup>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과거청산 과제인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그 법적인 측면에서의 청산과 NGO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한일간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 보기로 한다.

## II. 왜 ‘법적 정의’인가?

일본군성노예란, 일제와 그 군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그 감시 아래 일본군의 ‘성노리개’가 되어야 했던 여성<sup>2)</sup>들을 가리킨다. 20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80% 정도가 일제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의 여성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들은, 1937년 남경대학살 당시의 일본군에 의한 대규모 강간사건이 국제적인 반발과 중국인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것을 계기로,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제 정부와 군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설치된 ‘위안소’에 강제로 끌려가, 좁은

- 1) 김대중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 소속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 발언. 『연합통신뉴스속보』, 1998.2.26. 이 글에서 인용하는 국내의 통신 및 신문의 기사는 PC통신 천리안을 통해 검색한 것이다. 일자의 표기 또한 그 검색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2) 종래 이 여성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종군위안부·정신대·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그 중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종군’이나 ‘위안’이라는 용어가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신대의 경우도, 그것이 애당초 性과는 직접 관련이 없이 일반적인 노동을 착취당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는, 한편으로 이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삶을 ‘노예’의 삶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으로 고려하여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비록 반따옴표를 붙이기는 했지만, 위안부라는 용어가 가지는 자발성의 뉘앙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에 완전히 부합되는 용어라고는 하기 어렵다. 게다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90년대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려는 노력이 거듭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보다 실제에 부합되는 일본군성노예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국제사회의 경향을 고려하여, 그리고 이제는 문제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일본군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에 관해서는 강만길,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과 호칭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참조.

방에 갇힌 채 그 바깥에 줄을 선 일본군들에 의해 밤이고 낮이고 능욕당했으며, 차고 때리고 고문하는 등의 잔인한 폭행을 당했으며, 허가가 없으면 위안소를 벗어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죄수와 같은 생활을 강요당했다. 또한 그들은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패주하는 일본군에 의해 버려지거나 살해당했으며, 살아 남은 자들도 버려진 몸과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 갈 수 없어 자살하거나 이국에 남는 길을 선택했으며, 간신히 고향에 돌아온 자들도 과거의 괴로운 기억에 시달리고, 자신들이 사는 사회로부터 배척될 것을 두려워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고통에 찬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sup>3)</sup>

한편 피해자들의 이러한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1948년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던 수천명의 일본군성노예 중 ‘네덜란드인’에 관련된 가해자만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것<sup>4)</sup>을 제외하면, 연합군에 의한 어떠한 전범법정에서도, 그리고 일본의 어떠한 재판소에서도, 가해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sup>5)</sup>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 일본은 지금까지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不正義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의 민주화가 일정 정도 진전된 1990년대에 들어서,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의 ‘강요된 침묵’을 어렵게 깨고 피해자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아픔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의 ‘지체된 정의’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 3) 일본군성노예의 실상에 관해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편, 『증언집 I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위안부들』, 한울, 1993 ; 정신대연구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50년 후의 증언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위안부들』, 한울, 1995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회 엮음,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위안부들 2』, 한울, 1997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엮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1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주 2) ; 吉見義明, 『從軍慰安婦』, 岩波書店, 1995 ; 國際法律家委員會(ICJ) 저 / 自由人權協會(JCLU)·日本の戰爭責任資料センター 역, 『國際法からみた「從軍慰安婦」問題』 (원제목 Comfort Women : an unfinished ordeal), 明石書店, 1995 참조.
- 4) 吉見義明, (주 3), 175-192면 참조.
- 5) 望田幸男, 『「戰爭責任・戰後責任」問題』, 栗屋憲太郎 외5, 『戰爭責任・戰後責任』, 朝日新聞社, 1994, 7면.

이상의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군성노예 문제는 매우 복잡한 원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속되어 온 것이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식민지의 빈곤한 가정의 여성이었다. 그들이 '광복' 이후에도 오랫동안 배개를 적시며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피해의 사실을 입에 담을 엄두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들을 억눌렀던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남성중심주의적인 구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진상규명·사실인정·사죄·추모비 건립·배상·처벌·역사교육<sup>6)</sup>이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완전히 실현될 때, 그리고 그들을 억눌렀던 한국 사회의 잘못된 구조가 완전히 바뀔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적 정의'의 추구는 그러한 '역사적 정의'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들의 요구의 일부인 배상과 처벌이 불법에 대한 시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법적 정의'는 애당초 '역사적 정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지난 10여 년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는 과정에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은 한국에서의 국가에 의한 범죄와 베트남에서의 한국의 범죄에 대한 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감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국제사회에서 '전시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 점에서 '법적 정의'는 피해자의 구제를 넘어서서,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정의'의 중요한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Ⅲ. '법적 정의' 추구의 여러 모습

#### 1. 일본에서의 소송과 입법운동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관한 '법적 정의'의 추구는 우선 일본의 재판소에서의 소송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일제의 침략과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관련하여 일본의 재판소에 제기된 이른바 '전후보상'소송은 60건 가까이 되

6) 박원순,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사, 1996, 273면.

며, 그 중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원고인 소송은 7건(한국인 2건, 중국인 2건, 재일한국인 1건, 대만인 1건, 필리핀인 1건)이다.<sup>7)</sup> 이들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원고들은 국제법과 일본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소송을 포함한 위의 모든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지금' 하나도 없다. 1998년 4월 27일 야마구찌(山口)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下關) 지부가, 일본국을 피고로 한 한국인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청구와 관련하여, "철저한 여성차별·민족차별사상의 표현이며, 여성의 인격의 존엄을 근거에서부터 침해하고, 민족의 긍지를 유린하는 것"인 성노예제도의 "피해자에 대해, 그 이상의 피해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보증해야 할 조리상의 법적 작위의무"로서 "특별 배상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위법하게 게을리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금 각 30만엔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sup>8)</sup>을 선고한 것이 유일한 예외였다. 하지만, 일본군성노예를 강요한 원래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법 위반을 문제삼지 않는 등 애당초 문제가 적지 않았던<sup>9)</sup> 이 판결마저도,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검정 통과를 강행하기 직전인 지난 3월 29일,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에서 뒤집혀 원고 전면 패소가 선고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재판소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하나도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일본의 재판소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이른바 '전후보상'재판의 판결 중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일본 재판소의 보수적인 체질<sup>10)</sup>을 고려할 때, 그리고 관련 재판에서 일본의 재판소가 극히 일본 국내법적인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 승소의 판결은 기대하기 어

7) 김은식, 「전후보상운동 워크숍 참고자료」, <http://victim.peacenet.or.kr/>; 『戰後補償請求訴訟一覽』, 藤田久一外2編, 『戦争と個人の権利』, 日本評論社, 1999, 155-159면 참조.

8) 판결문 전문은 『정신대 자료집 X』(<http://witness.peacenet.or.kr/index.htm> - 자료실 - 문서자료 - 시모노세키 재판 평석회 판결요지)의 「부록 1」 참조.

9)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 - 시모노세키판결을 중심으로 -」, 『人權과正義』 제167호, 1998.11. 참조.

10) 戸塚悦朗, 「國際法から『從軍慰安婦・強制連行問題』を問う」, 國際人權研究會編, 『責任と償い』, 新泉社, 1993, 115-117면 참조.

렵다. 국제법의 원용은 거부한 채 일본 국내법상의 시효를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제쳐둔다고 하더라도, 「대일본제국헌법」 아래에서는 국가의 권력적 작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국가무책임의 원칙)<sup>11)</sup>이었다고 하는, 극히 일본적인 법논리를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상황에서는, 애당초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한편 일본에서의 움직임 중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입법을 통한 해결의 모색이 추구하고 있다<sup>12)</sup>는 것이다. 일본군성노예와 관련된 일본에서의 입법운동은,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 활동해 온 토쓰카 에쓰로오(戸塚悦朗) 변호사가 「중군『위안부』피해자개인배상법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위안부” 문제의 입법해결을 요구하는 모임’ 등의 시민단체와 ‘전“위안부”의 보상입법을 요구하는 변호단협의회’·‘전후처리의 입법을 요구하는 법률가·유식자의 모임’ 등의 전문가단체들이 독자적인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어져, 2000년에는 민주당과 공산당과 사민당 각각의 법률안이 참의원에 제출되었으며, 2001년 3월에는 3당 합동의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기에 이르렀다<sup>13)</sup>.

이러한 일본의 입법운동은 일본 재판소의 한계를 뛰어 넘어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일단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지향하는 방향이, 범죄의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일

11) 이에 관해서는 西莖章, 「戦争賠償と國家無答責の原則」, 『法政理論』 第31卷 第2號, 1998 ; 秋山義昭, 「行政法からみた戦後補償」, 奥田安弘・川島眞外, 『共同研究 中國戦後補償一歴史・法・裁判』, 明石書店, 2000 ; 古川純, 「日本國憲法と戦後補償」, 『法學セミナー』 477, 1994. 4. 참조.

12) 이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은, 朴在哲, 「戦後補償立法運動の現状」, 『季刊 戦争責任研究』 第30號, 2000. 12. 참조.

13) 이들 법안의 내용은 <http://witness.peacenet.or.kr/index.htm> - 자료실 - 문서자료의 관련 자료 참조.

본의 국회에서, 과연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

위와 같은 일본에서의 '법적 정의' 추구의 지지부진한 모습은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1992년 일본군성노예 문제가 유엔 인권기관에 제기된 이후, 「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서」<sup>14)</sup>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보고서」<sup>15)</sup>를 거치면서 전개된 법적 논의는 1998년 8월 21일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에서 '환영'하는 형태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게이 맥두갈(Gay McDougal) 보고서」<sup>16)</sup>를 통해 집대성되었다. 이 보고서의 부속문서인 「제2차대전 중 설치된 『위안소』에 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은, “일본 정부 자신이 행한 조사에서 확정된 사실만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는, “노예제,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라고 하는 중대한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위안부”에게 가해진 잔학행위에 대해, 구제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구제는, 일본 정부에 의한 전(前)‘위안부’에 대한 개인배상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에 더하여” “위법행위를 한 일본군 장병 개개인”은 물론이고, 그들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장교와 관료” 그리고 널리 “강간소의 설치·감독에 책임이 있는 정부·군관계자를 소추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1992년 이래의 “법적 책임에 관한 논쟁”을 “완전히 결착”지운 것이었다<sup>17)</sup>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군성노예를 강요한 행위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며, 그에 대해 바로 지금 배상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으로서 선언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18)</sup>

14) 國際法律家委員會(ICJ) 저 / 自由人權協會(JCLU)・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역, (주 3).

15) U.N. Doc. E/CN.4/1996/53/Add.1

16) U.N. Doc. E/CN.4/Sub.w/1998/13

17) 前田朗, 「解説 人權小委員會におけるマクドゥーガル報告書採擇」, VAWW-NET Japan 編譯, 『戦時・性暴力をどう裁くか - 國連マクドゥーガル報告全譯 -』, 凱風社, 1998, 180면.

18)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분석으로는 또한 김창록 외2,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은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의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다시 한번 세계시민의 이름으로 선언되었다. 피해국인 한국·북한·중국·대만·필리핀·싱가포르 등과 가해국인 일본의 시민단체들의 주최로,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현재의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에 연결지우는 국제공청회를 결들여 5일간 진행된 이 '시민들의 법정'은, 일본군성노예 제도에 대해 "천황 히로히토는 ... 유죄이다. 일본 정부는 ... 국가책임을 진다"라고 선언했다.<sup>19)</sup>

### 3. 한국과 미국에서의 새로운 움직임

한편으로 일본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을 살리기 위해,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새로운 움직임은,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관한 '법적 정의'의 추구하고 관련하여 매우 주목된다. 먼저 한국에서는, 2000년 5월 1일 한국인 징용피해자 6명이 부산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미불임금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4월 20일 현재 6차공판까지 진행되었다<sup>20)</sup>. 물론 이 소송은 일본군성노예에 관한 소송은 아니지만, 원고들의 피해가 일제의 강점에 따른 피해이고 그 피해가 일본의 거부에 의해 아직까지도 배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군성노예의 경우와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자에 관한 '법적 정의'의 추구하고 관련해서도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일본군성노예의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의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소송에 의해 촉발되어, 2000년 8월부터 일본군성노예를 포함한 일제의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통해 일본의 책임을 묻고자 연대활동을 펼쳐 온 일제강점기강제동원진상규명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일제하강제동원피

해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초안이 발표되었다.<sup>21)</sup> 초안은, "일제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1.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3. 유골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위령 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7.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의 움직임으로서는, 우선 1998년에 「나찌 전쟁범죄 규명법」(Nazi War Crimes Disclosure Act)<sup>22)</sup>이 제정된 것이 주목된다. 이 법은, '나찌 전쟁범죄 기록 합동조사단'(Nazi War Criminal Records Interagency Working Group)으로 하여금 1) 미국에 있는 모든 기밀취급 중인 나찌 및 "나찌 독일 정부의 동맹국이었던 모든 정부(any government which was an ally of the Nazi government of Germany)"의 전쟁범죄 기록을 찾아 내고, 감정하고, 목록을 만들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2)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대중에 대한 그러한 기록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3) 그에 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1999년 1월 11일에는 대통령 집행명령(executive order) 13110호에 의해 활동기간 3년의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합동조사단은, 2000년 5월 24일에는, 나찌 관련 기록 조사가 일단락된 것을 계기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포로로 붙잡혀 강제노동에 종사했던 적이 있는 태평양전쟁사가 린다 홈즈를 새로 조사단의 고문으로 임명하여, 731부대의 생체실험과 일본군성노예, 남경학살 등과 관련된 일제의 전쟁범죄 기록 조사를 개시했다.<sup>23)</sup> 그리고, 2000년 12월 6일에는 「일본 제국주의 정부 규명법」(Japanese Imperial Government Disclosure Act)<sup>24)</sup>이 미국의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합동조사단의 명칭이 '나찌 전쟁범죄 및 일본 제국주의 정부

『法學研究』(釜山大學校 法科大學·法學研究所) 제37권 제1호, 1996. 12. 참조.

19) 이 「법정」의 판결은 <http://home.att.ne.jp/star/tribunal/> 참조.

20) 이 소송에 관해서는 '미쓰비시중공업한국인징용자재판지원회' 홈페이지(<http://www.freechal.com/antimitsubishi/>) 참조.

21) 공청회 자료집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홈페이지(<http://victim.peacenet.or.kr/>) 참조.

22) 전문은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05:S.1379.ENR>: 참조.

23) 「미 전문기관, 일 전쟁범죄 조사착수」, 『한겨레』, 2000.5.25.

24) 전문은 <http://www.nara.gov/iwg/title8.html> 참조.



기록 합동조사단(Nazi War Crimes and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 Interagency Working Group)으로 바뀌고, 합동조사단의 활동기간이 2003년 12월까지로 연장되고, 일본의 전쟁범죄에 관한 미국 정부 기록의 기밀취급 해제가 합동조사단의 임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됨으로써, 일제의 전쟁범죄 기록 조사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게 되었다.<sup>25)</sup>

또한 1999년 7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2차 대전 노예노동 피해자 및 제2차 대전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정의에 기초하는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에 의한 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멸시효 규정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 성립되었다.<sup>26)</sup> 이 법은, 우선 제4조에서, 주민사소송법에 354조 6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그 354조 6항의 (a)(2)에서, “제2차 대전 강제노동 피해자”를 “나찌정권, 그 동맹국 또는 동조국에 의해 정복된 민간주민” 혹은 “나찌정권, 그 동맹국 또는 동조국에 의한 전쟁포로”라고 규정함으로써, 나찌정권의 동맹국이었던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자도 원고가 될 수 있게 했다. 그 354조 6항의 (a)(3)에서는, “배상”이 “개인들에게 지불되었어야 할 임금 및 제수당과 실행된 노동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현재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명기했다. 또, 그 354조 6항의 (c)에서는 “본항에 기초하는 소송은, 2010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기된 경우는, 적용될 수 있는 시효규정의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소멸시효의 문제를 해결했다.<sup>27)</sup>

이 법은, 그 2조 및 3조의 내용에 비추어 관련 ‘기업’을 주된 피고로 상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추가되는 주민사소송법 354조 6항의 (a)(1)과(2)의 “제2차 대전 노예노동 피해자” 및 “제2차 대전 강제노동 피해자”의 정의에 있어서, 그 가해자가 “나찌정권, 그 동맹국 및 동조국, 또는 나찌 정권 또는 그 동맹국 및 동조국에 의해 점령되었거나 또는 그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에서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기업”의 3자로 규정되고, 또 그 (b)에서, 그들 3자가 피해자의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모든 자 또는 그 이익승계인 (any entity or succes-

sor in interest thereof)”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나찌정권, 그 동맹국 및 동조국”이 피고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법을 근거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아직 없다. 하지만, 이 법이 성립된 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져, 2000년 8월 22일 현재 강제노동 피해자를 원고로 한 소송이 30건 이상 제기되어 있다. 그리고 소송은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관련된 기업을 상대로 급속히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 지역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안부를 수송한 철도·해운회사, 수용소를 지은 건설회사, 콘돔이나 약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준비 중에 있다.<sup>28)</sup>

뿐만 아니라 2000년 9월 18일에는 한국과 중국·대만·필리핀 네 나라 출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15명이 미국 워싱턴의 연방지방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sup>29)</sup>에서 원고들은, ‘성노예’제도를 설립·유지한 일본 정부의 행위가, 전쟁범죄·인도에 대한 죄를 범한 것이며, 다수의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공개와 배상 등을 청구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지방법원은 국제법 혹은 미국이 체결한 조약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외국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 관할권을 가진다”라는 「외국인불법행위배상청구법(Alien Tort Claims Act : 28 U.S.C. 1350)」에 따라 미국의 법원이 이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sup>30)</sup>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그것이 일본의 바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위에서 지적한 일본 재판소의 특수 일본적인 국내법 논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결과 법적 해결의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은 일본 정부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범죄사실의 증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일본 정부나 기업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것은 일본에 대한 커다란 압력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한국

25) 이에 관해서는 합동조사단의 홈페이지(<http://www.nara.gov/iwg/>) 참조.

26) 전문은 [http://info.sen.ca.gov/pub/bill/sen/sb\\_1201-1250/sb\\_1245\\_bill\\_19990728\\_chaptered.html](http://info.sen.ca.gov/pub/bill/sen/sb_1201-1250/sb_1245_bill_19990728_chaptered.html) 참조.

27) 戸塚悦朗, 「これからの日本と國際人權法 [連載第5回]」, 『法學セミナー』 538, 1999. 10. 참조.

28) 「미국서 일본 기업에 첫 위안부 소송」, 『한겨레』, 2000. 8. 23.

29) 이 소장은 미국 소송을 이끌고 있는 정연진 위원장으로부터 전해 받았다. 정 위원장께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한다.

30) 미국에서의 소송에 관해서는 한우성, 「끝나지 않은 전쟁 - 미국에서 진행중인 '일본군위안부' 및 징용 소송에 대한 보고서」, 『당대비평』 13, 2000년 겨울호 참조.

과 미국에서 일본의 전쟁범죄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발굴될 경우 그것은 일본의 국제법상의 책임에 대한 증거를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움직임들은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시한 해결책의 하나인 배상을 실현하는 유력한 방법으로서 크게 주목되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의 소송의 경우 '성공한 선례'가 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독일 기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이다. 사실 50년이 가까와 오는 오랜 세월 전의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는 데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난점이 따른다. 이것은 유대인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가 승소한 소송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유대인 소송은, 당초 '이미 처리가 끝난 과거의 일'이라며 버티던 독일 기업과 독일 정부로 하여금, 결국 각각 50억 마르크를 내어 '기억, 책임, 미래 기금'<sup>31)</sup>을 만들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법정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관련된 집회와 심포지엄 등이 지속적으로 열리면서, 미국의 여론이 움직여 독일 기업과 정부에 압력을 가한 결과였다. 물론 독일측이 '법적 책임'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대인 소송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령인 피해자들이 그 생전에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는 '절반만이라도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미국에서의 소송이 이미 일본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주목된다. 일본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소송은 '일본 외무성과 기업을 패닉상태에 빠뜨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강제연행의 피해자인 중국인들이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오카(花岡)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기각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11월 29일 화해가 성립된 것<sup>32)</sup>은 일본 기업측이 '바깥'으로부터의 압력을 염두에 둔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국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소의 원고 패소 판결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일본 기업측에서 먼저 화해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31) 이 기금에 관해서는 矢野久, 『ドイツ「記憶・責任・未来」基金の成立とその歴史的意義』, 『季刊 戦争責任研究』 第30號, 2000. 12. 참조.

32) 이에 관해서는 新美隆, 『花岡事件 - 和解の経緯と意義』, 『季刊 戦争責任研究』 第31號, 2001. 3. 참조.

#### IV. '법적 정의'의 추구하고 정부와 NGO

##### 1. 한일 양국 정부의 회피

일본군성노예 문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다방면에 걸친 '법적 정의'의 추구가 전개되는 가운데서도, 한일 양국 정부는 줄곧 이 문제를 회피해왔다. 일본 정부는 당초에는 민간의 업자가 한 일일뿐 일본 정부나 일본군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전면 부정했다.<sup>33)</sup> 하지만, 일본 쥬우오오(中央)대학의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가 일본방위청방위연구소도서관에서, 6점의 증거자료를 발견하여 신문에 공개한<sup>34)</sup> 직후인 1992년 1월 13일에는 "충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사죄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1992년과 1993년에 두 차례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일본군과 관헌의 관여와 일본군성노예의 징집·사역에서 강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것을 인정했다.<sup>35)</sup>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편으로 1996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라는 반관반민의 기구를 설치하여 일본 국민으로부터 모은 모금을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함으로써 '도의적 책임'<sup>36)</sup>을 다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그와같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결과는 관련국의 피해자, 민간단체 및 정부의 거센 반발이었다.<sup>37)</sup> 또한 일본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책임의 은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본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일본군성노예에 관한 일본의 책임이 인정되고 추궁될 때마다, 진상규명과 배상 및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증거를 은닉·인멸하거나, 허위의 공술에 의해 진상규명·처벌을 방해했다.<sup>38)</sup> 그리고 최근의 미국에서의 소송과 관련해서

33) 吉見義明, (주 3), 3면.

34) 『朝日新聞』, 1992. 1. 11.

35) 吉見義明, (주 3), 6면.

36) 국민기금의 「사업설명서」, 『法學セミナー』 502, 1996. 10., 22면 참조.

37) 戸塚悦朗, 『「アジア女性基金」支拂い強行』 (連載33), 『法學セミナー』 502, 1996. 10., 20-21면; 『한겨레』 1997. 1. 12, 1. 13. 참조.

38) 戸塚悦朗, 『ICJ最終報告書への外務省の虚偽戦術』 (連載13), 『法學セミナー』 482, 1995.

도 주권면제와 한일간 조약에 의한 해결을 내세우며 기각신청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여 미국 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sup>39)</sup>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역사교과서 파동'을 전후한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흐름 속에서 야스쿠니(靖國) 신사 공식 참배를 공언하고 있는 코이즈미 준이찌로오(小泉純一郎) 내각이 출범한 현재의 상황에서, 조만간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당연히' 일본 정부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1991년 12월 6일에 이르러서는 김학순 할머니 등이 제소까지 하게 되자, '선진상규명, 후배상문제 검토'라는 논리를 세워 일본 정부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그리고 1992년 1월 24일에는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을 설치하고, 정부각 부처가 문서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모아 1992년 7월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정신대 피해자 신고'를 접수했다.

김영삼 정부에 들어선 1993년 7월에는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이 발효되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게 되었다. 1996년 2월에는, 쿠마라스와미 중간보고서가 발표된 후 국제연합에서 NGO를 중심으로 한 그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표명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표자가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전면 지지하고, 개인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국가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혔다.<sup>40)</sup> 1997년 11월 18일에는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정부, 일본 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일본인들에 대한 국내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한 어업 협정 일방파기가 문제가 된 1998년 1월 26일의 국회에서 당시의 유종하외무장관은,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에는 일본군성노예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배상책임이 남아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해 종래의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sup>41)</sup>. 또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도 한국 정부는 그 대표자를 통해 1998년 4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들이 총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며,<sup>42)</sup> 같은 해 5월 7일에는 피해자 1인당 국민성금 300만원을 포함한 생활안정지원금 3,450만원씩을 지급했다.<sup>43)</sup>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이것은 우선 1993년 3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이 "물질적 보상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런 점에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관계정립에 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으로써<sup>44)</sup>, "기본적으로 아직도 그들 자신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조차도 안하고 있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스스로 주"어 버린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45)</sup> 또한 김대중 정부의 경우에도, 대통령 취임식 직후인 1998년 2월 26일에는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인권문제인 만큼 양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인이 납득하도록 처리해야 한다"라고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sup>46)</sup>, 3월 18일에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이를 일본 정부에 청구한다는 '선보상 후청구' 방침을 확인했음에도<sup>47)</sup> 불구하고, 위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최초로 결정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4월 14일의 국무회의에서는, 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다음 "더 이상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는

2. ; 「國連人權小委「行政的審査會設置」等を日本政府に提示」(連載21), 『法學セミナー』 490, 1995. 10. ; 「壓倒的な支持を受けるクマラスワミ報告書 --國連人權委員會中間報告」(連載29), 『法學セミナー』 498, 1996.6. ; 「挫折した日本政府のクマラスワミ報告書 拒絶要求」(連載30), 『法學セミナー』 499, 1996. 7. 참조.

39) 「日, 美 위안부소송 '기각 로비' 가능성」, 『연합통신뉴스속보』, 2001. 5. 15.

40) 戸塚悦朗, 「クマラスワミ報告書のインパクト」(連載31), 『法學セミナー』 500, 1996. 8., 15면.

41) 『조선일보』, 1998. 1. 26.

42) 『연합통신뉴스속보』, 1998. 4. 7.

43) 『한겨레』, 1998. 5. 7.

44) 『동아일보』, 1993. 3. 16.

4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외무부 답신에 대한 본 협의회의 입장」,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준비22호, 1993. 9. 2., 2면.

46) 『연합통신뉴스속보』, 1998. 2. 26.

47) 『연합통신뉴스속보』, 1998. 3. 18.

대신 과거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는 방침'이 제시된 것이 문제가 되어 결정을 보지 못하였고<sup>48)</sup>, 논란 끝에 결국 4월 21일에 가서 그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의결을 하게 되었으나, 그 의결 이후에도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배상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sup>49)</sup>, '선보상 후 청구'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찌 케이조오(小淵惠三) 총리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과 「행동계획」<sup>50)</sup>을 발표하고, 한일간 과거청산의 '종결'을 언급한 후에는, 더욱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대일햇볕정책'의 수정을 언급하기에 이른 김대중 정부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의 소송을 이끌고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피해자 변호인단'이, 일본 정부의 기각신청서에 대응하기 위해 주미대사에게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가 주목된다. 변호인단은 위의 청원서에서, 김원웅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정빈 외무장관이 2000년 10월 25일 국회에 접수시킨 답변서에서 밝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즉 1965년의 한일간 조약과 협정에 의해 한국 국민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문서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sup>51)</sup>

## 2. NGO의 활약

위에서 살펴 본 한일 양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NGO의 활약상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사실 일본군성노예 문제에서처럼, NGO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예도 발견하기 힘들다.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NGO로서는 한국정신

48) 『한겨레』, 1998. 4. 14.

49) 『한겨레』, 1998. 4. 20.

50) 「김대중 대통령 일본 공식방문 결과」(<http://www.mofat.go.kr/> - 외교자료실 - 외교문제해설 - 1998년 - 98년 제9호) 참조. 한일 '신파트너십'에 대한 분석은 김창록, 「한일관계와 과거청산 - 한일 '신 파트너십'을 실마리로 -」, 『國際地域問題研究』(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연구소), 제17권 제1호, 1999. 3. 참조.

51) 「美위안부소송 변호인단 한국 입장 석명 청원」, 『연합통신뉴스속보』, 2001. 5. 15.

대문제대책협의회, 나눔의 집, 한국정신대연구소, 정신대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시민모임, 경남 정신대문제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NGO는 피해자들에게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활동함으로써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하고,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입법을 청원하는 등 실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사적 정의'의 실현 위해 노력해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대협은,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를 2001년 5월 16일 현재 460회나 이끌어 오는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와 ILO 그리고 아시아연대회의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법적 정의'의 실현에도 앞장서 왔다.<sup>52)</sup> 위에서 살펴 본 일본군성노예에 관한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은 정대협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도출된 것이었으며,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심판하는 2000년 여성국제전법법정' 또한 정대협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다.

사실 1990년대 초에 일본군성노예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한국과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널리 국제사회에서도 '전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시 여성의 인권'이 국제사회에서 확실한 인권항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르완다와 구유고의 전범법정에서는 '전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이 실제로 처벌되기에까지 이르렀다. 바로 이와 같이 새로운 인권항목을 만들어 낸 것은 다름아닌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NGO들이었던 것이다.<sup>53)</sup>

이와 같은 NGO들의 활약은 국가와 정부가 회피와 무위로 일관하고 있을 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시민들의 힘에 의해 문제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그만큼 더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 일본군성노예라고 하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단지 그 '과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권과 미래의 법가치에도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또한 이것은 동시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NGO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52) 이에 관해서는 <http://witness.peacenet.or.kr/index.htm> - 정대협활동사 참조.

53) 이에 관해서는 戸塚悦朗, 『日本が知らない戦争責任』, 大學圖書, 1999 참조.

##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관한 '법적 정의'는, 한일 양국 정부의 회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NGO에 의해 활발하게 추구되어 왔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것은 현재 매우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차원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에서의 새로운 움직임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입법운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관심의 확산을 위해서는 소송과 입법운동을 국내외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는 확산된 관심의 힘을 동원하여, 한일 양국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본군성노예의 실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논리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변호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게 '법적 정의'를 가져다 주기 위한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신고를 한 201명 중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141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숫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격감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3년후의 시점은, 생존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앞으로 2~3년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까지보다 더욱 더 NGO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2001. 5. 20.)

## 발 제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과제

이 영 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과제

이 영 일<sup>1)</sup>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1948년에서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여 한반도 남한 일대에서 남북 학살 양 주체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태와 인식의 변화 및 국가폭력과 관련한 집단학살의 문제와 정부의 대응들을 열거해 보면서 민간인학살의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한정된 자료와 문헌을 통해서나마 지금까지의 다양한 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민간인 학살의 양태에 있어서는 1948년 2월 5·10 단독선거를 분쇄하여 민족 분단을 막고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무력투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2·7 구국투쟁이라는 '작은 전쟁'이라는 국지전에서부터 전면전인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 정전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특정 계기를 기준으로 나누어 각 기간의 민간인학살 양태를 분석한 연대기적 분석과<sup>2)</sup> 남북 양 학살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석 및 피학살자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학살행위에 따른 분류를 덧붙여 학살의 야만적 행위 유형에 따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전후에 특히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한반도 남한 일대의 민간인 학살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악마의 시대였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1) 글쓴이 이영일은 현재 여순사건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www.yosuicc.or.kr)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의 양민학살문제를 주 의제로 삼고 있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www.genocide.or.kr)'에서는 정책기획실장으로, 국가폭력을 주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 국제회의 한국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과 2002년 10월 여수대회 준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2)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5단계의 소 단계로 분류하여 분석적으로 접근한 글은 강정구, "미국과 한국전쟁" 『역사비평』 1994 여름호 참조. 이를 일부 수정하여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에 같은 제목으로 실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민간인학살에 대해 일관해 왔던 방침과 이에 따른 민중의 대응은 어떠했으며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와 향후 특별법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통해 50여년전 이 땅에서 일어난 민간인학살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민간인학살의 실태와 인식의 변화

### 1) 민간인학살의 유형별 분석과 특징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대한 해방전후의 격동기 속에 해방 후 계급적, 민족적 모순의 해결을 둘러싸고 외세, 지배세력과 민중과의 대립이 최고 수준에서 가장 적대적 형태로 폭발된 형태의 좌익의 무장투쟁에 대한 남한 정부의 토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토벌은 결국에 있어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으며,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로 이어져 왔던 것인데, 이를 연대기별, 학살주체별, 피학살자별, 학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민간인학살의 연대기적 양상이다.

이는 1) 한국전쟁의 첫 단계인 작은 전쟁 기간 주로 제주4·3항쟁이나 여순사건과 같은 인민항쟁, 유격대 투쟁, 38° 선상의 소규모 국지전인 남북충돌로 특징화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10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기간의 민간인학살은 주로 인민항쟁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또 1949년부터 본격화된 유격대 소탕과정에서 구사된 '견벽청야' 작전 등으로 지리산이나 문경과 같은 산간 지역 주민들이 학살을 당하였다.

또한 2) 한국전쟁 초기의 전면전 상태에서의 민간인 학살의 양상은 국민보도연맹원의 학살이나 형무소의 수감자 집단학살,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지방좌익과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남한 군·경의 무차별적인 학살의 양상이 전개되었다.

3) 한국전쟁 후기의 민간인학살의 양상은 비교적 소강상태로 접어든 시기로서 제2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후방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남한의 경우 빨치산 활동이 왕성했던 지리산 등 산간지역의 토벌작전 과정과 중국군의 참전을 계기로 급조된 국민방위군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5만여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후

반기의 대표적인 학살이다.

둘째는 학살주체별로 본 민간인 학살이다.

학살주체는 남한측에서는 미군, 국방군, 경찰, 서북청년단 등으로 대별될 수 있고, 북한측에서는 인민군을 주축으로 한 북한점령기관 일반, 빨치산, 지방좌익으로 대별 될 수 있다.

셋째는 피학살자별로 본 민간인학살이다.

피학살자는 남한의 경우 평택이남의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제2전선 지역주민, 피난민,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국민방위군이나 불심검문 또는 가택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는 불특정 다수 민간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넷째는 학살행위 유형별로 본 민간인 학살과 야만성이다.

학살행위의 유형에는 총살, 생매장, 초토화작전, 수장, 일본도에 의한 참살, 죽창에 의한 척살, 굶어 죽이기, 때려죽이기, 폭격이나 비행기에서의 기총사수 등이 있다.

위의 민간인 학살의 형태를 연대기별로 남한 일대에 국한하여 대입하여 볼 때에 그 양상은 한국전쟁 전의 국지전의 형태인 작은 전쟁기와 전면전의 형태인 한국전쟁 전기와 후기 모두를 관통하고 있으며, 학살주체별 유형은 주로 국방군에 의한 것이었으며 일부 인민군과 지방좌익에 의한 것도 있었다. 또한 피학살자별로 본 유형은 부역혐의, 공비 및 통비 혐의 등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었으며 학살의 행위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죽음의 형태를 다 동원한 것 같아 야만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남한 일대의 민간인 학살은 그 근원을 좌익의 무장투쟁에서부터 이야기되어야 하는바 지금까지 나타난 그 피해의 규모를 보면 당시 남한 인구의 1/20인 거의 1,130,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이를 연대기별로 학살시기를 보면 한국전쟁전의 국지전의 작은 전쟁 시기인 1948년 2월에서부터 1950년 6월의 한국전쟁 직전까지로 이 기간에 100,0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한국전쟁기의 전면전 상태에서는 주로 좌익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들로 구성된 국민보도연맹원 사건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북한측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대전형무소 산내면 골령골,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등에서 300,000명에 가까운 인명을 학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다수는

노근리와 같은 피난대열이나 익산역 오폭사건 및 지리산과 같은 거창, 산청, 외공, 남원, 순창, 구례 등 산간지역이나 나주, 함평, 화순 등의 토벌작전 과정 및 고양, 강화 등의 부역혐의로 인한 처형과정에서 730,000명으로 총 1,130,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에 민간인학살의 문제는 현재 한반도 남한의 현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문제이며 거의 유일하게 지역적 차별과 영호남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살의 주체는 국군과 경찰 및 미군에 의해 1,000,000명 수준이었으며, 인민군과 지방좌익, 빨치산에 의해 약 130,000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로 보면 88.5%의 절대 다수가 국군과 경찰 및 미군이라는 소위 아군에 의해 학살 만행이 저질러졌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전쟁전후기에 특히 남한 땅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추려진다.

- ① 피학살 인원이 남한 총인구의 20분의 1에 상당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 ② 불가항력이거나 우발적인 학살도 부분적으로는 있었지만, 명령 계통이 분명히 있는 의도적 학살, 조직적 학살, 준비된 학살이 큰 비중을 점했다. 이 점에서 남한에서의 학살은 전시를 틈타 벌어진 '국가 후원적 대량 살해' 범 죄요 국가 테러리즘 그 자체인 측면이 컸다.
- ③ 동족에 의해서든 미군에 의해서든 무고한 죽음, 죄 없는 죽음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은 거의가 무고한 것이라 할 만했다.
- ④ 피학살자에게 '죄'가 있는 경우라면 남·북 정권 어느 일방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였거나 반대의 혐의 또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뿐이었고, 그것은 결코 '죽을 죄'는 아니었다. 따라서 그런 경우의 처형·숙청·살해는 단연코 불법적 조치요 억울한 죽음인데, 그런 유의 학살이 부지기수로 많았다.
- ⑤ 좌·우의 쌍방에 의한 동족학살의 본질은 '이데올로기적 학살' 또는 '정치적 학살'(politicide)이었고, 미군이 저지른 학살 행위들은 부분적으로 정치적 학살의 외양을 띠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종족 학살'(좁은 의미의 genocide)이었다. 따라서 미군 주체의 학살은 '이족 학살'로 명명될 수 있다.
- ⑥ 좌·우의간 보복의 악순환에 의한 연쇄 학살의 양상도 많이 나타났다.
- ⑦ 어린이·노인·부녀자 등 방어 능력도 어떤 혐의의 여지도 거의 없는 약소

자들에까지 무차별적 학살이 자행된 경우가 많았다.

- ⑧ 학살 수법과 주검처리 방식이 매우 잔인하고 원시적이었다.
- ⑨ 어느 쪽이든 학살자(집단)들은 별 죄의식이 없이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를 꾀했다.

## 2)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점

이러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의 변화와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반공적인 관점으로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건의 일체를 좌익활동과 연계하여 거의 절대적으로 불온시 해 왔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아닌 안정된 국가운영만을 중요시한 결과로서 당연하게 반변혁적 입장을 취해 온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정부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내세우면서 일체의 비판적 반정부 활동을 '빨갱이' 소행으로 매도하고 민중과 좌익활동가들을 분리해 온 관점이었다. 따라서 민간인 학살의 경우, 좌익 및 부역 혐의와 지방 좌익의 극렬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선전해 온 것이다.

둘째는 변혁적, 구조적인 관점으로서 이른바 80~90년대의 운동권적 인식으로 이는 그 동안의 좌익활동에 대해 선형적 내지는 기계적인 파악의 귀결로서, 좌익 활동의 명분과 의의를 인정은 하지만 밑으로부터 역사를 재구성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차라리 민중의 역사라기보다는 조선공산당(남로당)의 역사에 가까운 관점을 가져온 것이다.

셋째는 인권과 평화의 관점으로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을 단순히 인적·물적 피해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관념적인 휴머니즘적 관점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바람직스럽게도 국가폭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중요시하면서 이에 대한 극복책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국가와 폭력의 뗄 수 없는 관련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 3. 국가폭력과 집단학살(Genocide)

#### 1) 양민의 개념을 재고

왜 '양민'(良民)이 아니고 '민간인'(民間人)인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인 NMD, TMD와 같은 무력 압력으로부터 남북 주체의 평화와 화해의 무드를 조성해 가려는 공존의 시대에 민간인 학살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는 우선 지난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양민'의 개념을 재고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에 양민증이라는 것이 존재하였는데, 이 양민증은 작고 형편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없으면 절대 외출을 할 수 없었다. 이 경우 좌익과 관련이 있는 가족, 의심을 받는 가족들 혹은 '통비분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양민증을 발급 받지 못했다. 그 뿐 아니라 양민의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 특히 좌익 관련자와 그 가족들은 이 엄혹한 이데올로기의 굴레 아래에서 사실상 국민, 혹은 민족 구성원으로 대접도 받지 못했으며, 사실상 죽은목숨처럼 생명을 부지해 왔다.

한반도 남한사회에서 빨갱이로 지목된다는 것은 전근대 시절의 천형과도 같았다. 빨갱이에게는 그 어떠한 처벌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부녀자와 자녀들에 대한 유린도 용납이 되었으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도 반발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쟁이 지난 50여 년 동안 피학살자들의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사실상 죽은목숨에 다름 아니어서 그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동네가 쑥밭이 된 이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4·3 사건이나 여순사건의 피해자들처럼 이 상처를 잊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철저히 침묵하면서 살아왔다. 그리하여 지난 1999년 10월 노근리 미군의 양민학살 사건이 전국에 메아리치고,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나마 진상규명 활동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도 극소수의 유족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선뜻 나서서 사람이 거의 없다. 목격자나 기적적인 생존자들은 이제 연로하여 거의 사망하였으며, 너무 연로하여 과거의 기억도 가물가물한 상태이다.

양민이라는 것은 사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에 의해 세계를 절대 선과 악의 이

분법으로 재단하여 좌익을 악으로 보는 개념이다.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근대 문명사회에서 이렇게 획일적인 잣대로 사람의 양심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가치를 절대 선으로 놓고 그것을 여기는 사람들을 불순한 존재로 규정하는 극도의 반공주의가 통용되는 한반도 남한사회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규범에서 사용되는 민간인(civilian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격전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민간인과 무장세력과의 구별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중 아동이나 여성, 노약자 모두를 무장된 적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양민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려 한다면, 누가 양민이고 누가 양민이 아닌가라는 소모적인 논쟁에 또 다시 휘말려 들어가게 된다. 동시에 그러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양민에 대한 학살은 부당한 것이고, 양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학살은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유도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공권력이 저지른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이른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 죽여도 상관없다는 천형과 함께 중대한 공권력의 남용과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양민의 전통적인 해석을 통해 민간인학살 사건을 풀어감에 있어서도 좌익 혐의의 피해자를 제외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를 드리운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용인하는 양민이라는 개념보다는 민간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따라서 좌우익의 구분을 떠나 전시에 발생한 모든 억울한 죽음들, 특히 남북한 양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학살을 저지른 국가는 현재의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을 일반 사람들과 격리시키며, 공식 역사해석을 통해 그들의 기억을 조작한다.<sup>3)</sup> 학살이라는 국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기

3) Herbert Hirsch,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p182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의 조작은 더 큰 부도덕성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인데, 진실을 덮으려면 덮으려 들수록,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이야기처럼 강제로 은폐하려는 측은 더욱 더 무리한 정책과 은폐 작업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2) 민간인학살의 문제는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

모든 형태의 전쟁 혹은 대량학살(genocide)은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인간이 얼마나 더 잔인해 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더 야만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권의 박물관과 같다. 오늘날 여러 형태의 반인권적인 사례가 언급되고 있지만, 국가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주체에게 저지른 폭력, 그리고 정치권력에 의해 조장된 인종분규나 종족 갈등으로 인한 대량학살이야말로 20세기 문명을 야만으로 떨어뜨린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물리력의 독점 기구'로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일이야말로 노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걸음이고, 이 첫 걸음을 회피하는 모든 인권 운동이나 인권 담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유혹을 막아야만 사회 전 영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고 재현되어 왔었다. 제주4·3에서 여순사건, 한국전쟁, 베트남 양민학살, 5.18광주민중항쟁,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의문사 그리고 최근의 대우차 노동운동의 강경진압사태는 가공스런 국가폭력이 강도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끊임없이 길들여지고 맛들여짐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그 국가폭력의 사슬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이를 끊어야 한다. 한반도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올바른 신장을 위해, 국가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국가폭력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 땅에 민간인학살과 같은 엄청난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 사회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도 이제 국가폭력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만 한다. 소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학살은 한반도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 3)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

지금까지의 이러한 초법적이고도 불법적인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은 할 수만 있다면 사건을 최대한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였다. 그 중에서 거창양민학살, 제주4·3의 예에서처럼 극히 일부 사건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좌익이나 좌익 혐의자 및 통비분자를 제외한 소위 양민으로 분류되는 우익의 피해에만 국한하여 해결하려는 형식적인 시늉에 그쳐왔다 하겠다. 이는 설령 피학살자가 좌익으로 분류된 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불법적인 조치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민간인학살의 문제 해결은 실제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보다는 배상이 아닌 개인적 보상에 치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진상규명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민원처리 수준으로 격하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 4. 맺는 말 : 민간인학살의 향후 과제

### 1) 민중의 대응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은 할 수만 있다면 사건을 최대한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면서 실제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보다는 배상이 아닌 개인적 보상에 치중하려다 보니 문제를 풀어 가는 방식이 더욱 어렵기만 할 뿐이었다.

(1) 따라서 이제는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피학살자들이 스스로 나서야만 한다.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민간인학살과 같은 비슷한 경험과 사례지역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단일 대오로 묶여져야 한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30여개의 유족회와 제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 집단이 3주체가 되어 강력한 구심력으로 정치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즉 연구자 - 시민사회단체 - 유족회 간의 네트워크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00년 9월 7일 출범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민간인학살 범국민위)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전국의 유족회와

민간인학살 범국민위가 제주 4·3이 보여준 투쟁의 성과에서처럼 불과 1%의 제주도민의 정치력으로 국민여론을 돌파해 낸 지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2) 또한 민간인학살 사건을 실제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차원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별 입법이 아닌 통합 입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통합 입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국의 유족들이 우선 수십 개의 개별적인 특별법 청원과 입법 발의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전술이 필요하다. 2001년 5월 현재 11개의 특별법 청원이나 입법 발의 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옛말에도 우는 애라야 젖을 준다고 했다. 다행히도 지난 4월 30일에는 여야 의원 10여 명이 통합 입법을 위한 공동발의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공공연하게 통합 특별법으로 견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좌익으로 분류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 될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 보상의 민원처리 수준으로 격하되지 않기 위해서도, 현재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전 사회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일차적인 과제인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독자적인 실태조사도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의 자료를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만 한다. 이는 피해 실태에 대한 정부와 민간 자료가 서로 비교가 되어 그 동안 말로만 무성하게 전해오던 갖가지 통계와 조사 오차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광주 인권운동센터가 공동으로 광주전남 일대에 대한 민간인학살 피해실태 백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2002년 제6회 동아시아 인권평화 국제회의 여수대회(2002. 10. 17~10. 20)에서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 학살의 전모를 최초로 밝혀 보는 것도 내년 남한사회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정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2) 사실규명과 운동의 성과로의 이행

민간인학살의 문제가 단순한 한풀이 역사로만 노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최근 제주4·3은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통과되어서 이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제주4·3연구소 등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써 그 의미는 매우 크다. 또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문제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국가의 힘을 빌려 사건을 '해결'한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명예보상을 이루어 냈을 지는 몰라도, 당시의 중요한 한 흐름이었던 변혁적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위해 싸웠던 운동가들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제주4.3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답은 없는 셈이다. 현재의 제주4.3이 전체의 모습을 그려냈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제주도라는 지역(민) 차원의 논의가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다른 지역과 긴밀한 연대를 맺고 의미를 확장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제주4·3은 제주라는 특정지역의 사건으로 국한될 수가 있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과 광주5·18 민중항쟁이 그러한 과정을 밟으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되지 못하고 전주·정읍 일대와 광주에 국한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현재 역사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제주4·3의 진정한 해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사실규명인가, 명예회복인가, 보상인가? 이제는 제주4·3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과 광주5·18 민중항쟁에 대한 현재의 운동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또한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언론의 자기비판 실종과 사실 왜곡에 대한 검증도 차제에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의 사대주의와 권언유착은 실상 남한사회의 대표적인 왜곡언론의 주자인 조·중·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전 언론에 걸쳐 야기된 것으로서 비단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사건 상황을 두고 언론은 이를 어떻게 왜곡하여 보도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검증작업과 치밀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특별법의 주요 과제

민간인학살과 관련한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지금까지 광주5·18과 거창, 제주 4·3, 의문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학살 특별법의 목적은 민간인학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해 남북 양 주체의 평화와 화해의 무드를 조성해 가려는 공존의 시대에 부응하여 피학살자의 인권 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으로써 진정한 국민적 화해와 상생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2)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민간인학살은 책임있는 남북 양 주체의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임으로 좌우익의 피해사례를 모두 망라하여 적법한 사법적 처리과정이 아닌 한 사건의 범주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진압과 토벌 국민보도연맹, 예비검속이 그것이다. 이는 분단으로 인한 국민적 정서와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3) 진상규명위원회의 내용에 있어서는 피학살자 및 유족의 배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는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공식 입장 표명에 대해서 정신적인 명예회복뿐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배상도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소위 인권을 논한다고 하면서 개가 차에 치어 죽어도 개값을 물어주는 현실인데 하물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명이 살상되었는데 그것도 무고하게 죽었는데도 이를 애써 무시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4) 또한 진상규명위원회의 내용에 있어서 현장에서 학살당한 사람은 명예회복의 여지가 있지만 '운이 좋게도(?)' 재판의 형식을 통해 사형에 처해지거나 징역살이 한 사람은 명예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판이 재판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특별재심절차를 밟아 무죄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든가, 오히려 재판의 불성립,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죄라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5) 그런가 하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민간인학살에 대한 추가 진상보고서 보완작업이나 사료관 운영을 위해서 정부출연기금의 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중·고등 교육 교재(교과서)나 각종 정부기록 간행물에 반영사업으로 연계되어야 함은 물론, 역사적 교훈의 확립이란 취지로 다시 살펴볼 때에도 민간인학살 사건은 그 동안 정부의 심한 왜곡으로 인해 국민들이 전혀 잘못 알고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통한 전국민적 인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 4·3과 의문사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진상조사는 실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의 특별법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나 열람 제공 등을 할 수 있게 하고는 있으나, 정작 조사의 현장에서는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여전히 사건의 은폐 내지는 축소로 일관하고 있어 조사권을 갖고 있어야만 실제로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및 문헌

1. 김영범, 2000, 「집단학살의 기억」, 《동아시아의 근대의 폭력2》
2. 김동춘, 2000, 「민간인 학살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자료집》
3. 김삼웅, 1900, 『해방후 양민학살사』, 가람기획
4. 강정구, 200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실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자료집》
5.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200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자료집』
6. 동아시아 평화 인권 국제회의 한국위원회, 2000, 『동아인권대회 답사 자료집』
7.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1집』
8.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9, 『여순사건 자료 2집』

9.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0,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3집』
10. 부산매일신문사, 1991, 『울부짖는 원혼』
11. 한국역사연구회, 2000, 『한국전쟁 50주년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12.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1, 『여순사건 실태조사를 위한 2001년도 연수 자료집』
13. 문화방송, 200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보도연맹편』

## 토론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문제 해결 방안 접근 -이영일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과제를 중심으로-

채 의 진  
(문경양민학살유족회 회장)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문제 해결 방안 접근 -이영일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과제를 중심으로-

채 의 진  
(문경양민학살유족회 회장)

### 1.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한반도는 36년간의 일제식민치하에서 벗어났었다. 하지만 세계전쟁(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 소 양강대국은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양분하여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여 남북이 각기 다른 정치노선을 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로, 그리고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을 하면서 급기야는 동족끼리 총칼을 잡고 서로 죽이고 죽는 적대 관계로까지 치닫게 되었다.

6·25 한국전쟁은 국가 대 국가나,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이 아닌 동족끼리의 이데올로기(Ideology)전쟁 이었으며, 외국 군대까지 끌어들이 종족을 살상한 추악한 전쟁 이었다. 단군 이래 한민족의 최대 비극 이었던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전쟁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권력에 미쳐버린 미치광이들의 광란 이었다.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 시 있었던 6·25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남한 각처에서 국군과 경찰, 미군들의 만행으로 저질러진 양민과 민간인 집단학살은 그 규모나 내용이 천인이 공노하고도 남을 미증유의 대사건이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반세기가 흘렀다. 독재자 이승만이 저질러 놓은 미증유의 양민과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을 그 동안 역대 정권들은 해결의 의지는커녕 왜곡과 은폐에만 급급했었다. 1996년 1월 6일에 YS정권은 「거창 사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2000년 1월 12일에 DJ정권은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제정하여 명예회복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이들 두 지역보다 상괘(上卦)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제외한 YS, DJ 양 정권은 인권과 민생, 국민의 고통 등은 염두에 없이 순리나 형평의 원칙도 무시한 부도덕한 그런 정권 이었다는 의심을 받아도 마땅하다.

최근 한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에서 새로 편찬된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하여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국회와 정부에서까지 강도 높게 이를 규탄하여 일본 정부에 수정을 요구했다.

이를 지켜보면서 나는 마음이 무척이나 착잡하였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도 6·25 한국전쟁 전후에 국군과 경찰, 우익단체, 미군 등이 양민과 민간인을 대량으로 집단 학살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고 은폐시킨 것이 허다하기 때문이었다. 그 한 예로 「문경 사건」을 들어보겠다.

6·25 한국전쟁 6개월 전인 1949년 12월 24일 발생한 문경의 석달동 양민 86명 집단학살 사건은 국군 제3사단 25연대 3대대 7중대의 2소대(소대장 안택효 중사)와 3소대(소대장 유진규 소위) 병력 69명이 저지른 만행 이었음을 사건 즉시 본국에 보고된 미 극동군 사령부 정보일지와 주한 미 임시고문단장 로버츠(Roberts) 준장의 비망록이 증명했으며, 최근의 국방부의 2차에 걸친 현장 검증과 증언 청취를 통해서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문경 사건」은 공비들이 저지른 만행이었다고 피학살자들의 호적에 왜곡해서 기록한 채 은폐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나라 정부나 국회에서 그리고 언론이나 학계에서 과연 일본을 향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건에 대하여 규탄하고 수정을 요구할 자격과 양심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다. 이런 사실들을 만약 일본의 언론이나 정부에서 안다면 그들은 자기들을 규탄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우리를 향해 무어라고 말할까? 나는 우리 나라 정부나 국회 그리고 학계와 언론 모든 양심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외국인 일본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해서는 안되며 우리 나라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해도 되는 것인지를...

## 2. 총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제」라는 제하의 이영일 소장의 발제문은 1. 들어가는 말 2. 민간인 학살의 인식의 변화 3. 국가폭력과 집단학살(Genocide) 4.

맺는 말 : 민간인 학살의 향후 과제 등. 4개항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마다 중요한 문제점들을 세분했는데, 2항은 1) 민간인 학살의 유형별 분석과 특징, 2)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점, 3항은 1) 양민의 개념 재고, 2) 민간인 학살의 문제는 남한 인권 문제의 시발점, 3)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 4항은 1) 민중의 대응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2) 사실규명과 운동의 성과로서 이행, 3) 특별법의 주요 과제 등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해결을 위한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이 소장은 여수지역사회 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여순 사건은 물론 6·25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관한 자료와 문헌들을 수집하여 본인의 그간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지적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내용에 공감을 가지면서 다음의 4가지 점에 대하여 문제가 있기에 본인의 생각을 제시할까 한다.

## 3. 양민(良民)과 민간인(民間人) 용어시비

발제문 3항 국가 폭력과 집단학살(Genocide) 제하의 1) 양민의 개념 재고  
- 왜 양민(良民)이 아니고 민간인(民間人)인가?

이회승 편 국어대사전과 시사영어사편 뉴우월드 韓英大辭典에 의하면

· 양민(良民) : 선량한 백성(국민), 천역(賤役)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백성(국민)

- Law abiding citizens, good citizenry(총칭)

· 민간인(民間人) : 관리나 군인이 아닌 보통사람 - a private citizen. 이라고 했다.

a nongovernmental person, a civilian

이 문제는 피학살의 시기와 지역 내용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가능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민간인 학살 범국민위의 공식 명칭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로 정해져서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면 지역 유족간의 분열을 조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 양민이란 용어를 써도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

#### 4. 유족과 유족회 문제

발제문 4항 1)의 1항에서 “이제는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피학살자 유족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민간인 학살과 같은 비슷한 경험과 사례지역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단일 대오로 묶어져야 한다. 30여개의 유족회와 제 인권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 집단이 3주체가 되어 강력한 구심점으로 정치력을 행사 해야한다.”라고 발제자는 제안했다. 참으로 바람직한 제안이다. 여기서 나는 유족 또는 유족회의 문제점을 지적해야겠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유족회가 조직된 곳이 30여 군데로 알려져 있지만 범국민위에 열심히 참여하는 유족회는 강화, 고양, 문경 등 3개 지역에 불과하고 대전, 함평, 부산은 한 두 번 참가했을 뿐이며 여타지역은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대구지역은 내분상태이고 함평과 나주는 지역간의 갈등이 있는 듯하며 경북은 도의회 특위에서 119건의 신고를 받아서 2000년 1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3개 지역을 현지 조사까지 벌렸지만 현재 문경지역만이 참여할 뿐 여타지역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인다. 이런 현상은 유족들의 무지한 탓도 있겠지만 전민특위의 영향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문경, 상주지역만 해도 양 지역에서 800여명이 보도연맹 원으로 학살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유족회 운명이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 5. 피학살자들의 수치에 관한 문제

피학살자들의 수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지역의 자료를 종합해서 어느 정도는 근사치가 계산되어서 발표해야 될 줄로 안다. 발제문의 2항의 1)항 민간인 학살의 유형별 분석과 특징에 의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그 피해의 규모를 보면 당시 남한 인구의 1/20인 거의 1,130,000명에 이르고 이를 연대기별로 학살 시기를 보면 한국전쟁전 기간에 100,000명 그리고 대전형무소, 경북 코발트 광산 등에서 300,000명, 노근리와 익산, 거창, 산청, 외공, 남원, 순창, 구례, 나주, 함평, 화순, 고양, 강

화 등에서 730,000명 등으로 약간은 세부화까지 되어 있다.

나는 2000년 12월 15일 부산 유족회 창립대회 참석 중 전민특위의 정기렬 목사가 측사를 통해 6·25전쟁 때 희생자가 남북한 합해 500만 명이나 된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듣기로는 대전형무소에서 1,800~3,000명, 대구형무소에서 1,402명,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1,000~1,500명으로 도합 5,000명 정도인데 이들 지역에서만 300,000명은 너무나 것 같으며 6·25 당시 남북한 합친 인구가 약 3,00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 명이 희생되었다면 당시 한반도 인구의 1/6이 희생당했다는 수치가 나온다. 내가 피학살자의 수치를 문제삼는 것은 인원이 많을수록 선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에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6. 통합 입법과 개별 입법

발제문 4항 민간인 학살의 향후 과제 1)의 2항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실제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차원으로 끌여가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별법이 아닌 통합 입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통합 입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국의 유족들이 우선 수십 개의 개별적인 특별법 청원과 입법 발의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발제자는 강조했다. 작금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통합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순수 양민이던 보도연맹 원이던 형무소 수감자던 법치국가에서는 개인의 인권이 절대적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은 말했다. 그래서 범국민위도 통합 입법을 추진중이고 국회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하지만 혹시라도 거창이나 제주 4·3처럼 개별 입법이 제정되더라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50여 년간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온 유족들에게 범국민위가 제3의 학살을 가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 7. 맺는 말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란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비단 위정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막힌 일들을 모른 채 묵인하고 있는 일반 국민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발 제

## 특별법제정 및 개정운동의 한계와 과거청산의 전망

김 삼 용  
(대한매일 주필)

## 특별법제정 및 개정운동의 한계와 과거청산의 전망

김삼웅  
(대한매일 주필)

### 1. 머리말

지난해 10월 17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한지 7개월이 지났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의문사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민주화운동'이란 "1969년 8월 7일(3선개헌 발의일)이후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의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항들과 내용이 미흡한대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대통령소속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여 활동하게 된 것은 1948년 9월 29일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최초의 국가적인 과거청산 작업이다.

해방직후에 설치된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1년여만에 좌초되어 친일파 척결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현대사의 왜곡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것은 곧 군사 독재를 키운 온상이 되고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의문사 문제를 잉태하는 씨앗이 되었다. 따라서 반민특위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역사적 맥락에서 인과와 업보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겠다.

반민특위의 좌절이 우리 현대사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이해한다

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을 헤아리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법률 내용에 문제점이 많았다. 조사 기간도 너무 짧다. 수사권이 없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국정원·검찰·경찰·기무사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벌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진상규명위원회가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진실규명 작업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관계기관에 협조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압수나 수색권한이 없다. 해당 기관이 협조 요청을 거부해도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다. 따라서 아무리 구정권 시대의 일이라 해도 권력기관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자료를 순순히 내놓을 리 없다. 소극적인 자료제출과 함께 진술을 회피하면 그만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수사기관의 전·현직 종사자들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진술을 회피해도 제재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정부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내년 3월까지로 활동기한을 연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현행법상 1회에 한해 3개월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회로 조정하여 9개월 동안 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참고인의 불출석과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규정 △과태료 부과와 징수절차 규정 등의 조항도 법개정 과정에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 정도의 개정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대부분 20~30여 년이 지나고 80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을 50명도 안되는 조사관들이 진상을 밝혀 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무소불위의 군사독재 상황에서 가해자 세력의 고의적인 은폐 및 축소 등으로 사건이 왜곡돼 있는 실정이다. 경우는 다르지만 최근 체포된 병역비리의 주범 박노항 사건을 보면 비호·은폐의 실상을 유추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며 위증처벌법 등 관련법을 보완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원회 조사관을 최소한 100명 정도로 늘리고 양심선언자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며 관계 기관이 자료 및 증거품을 제출하지 않

을 경우 검찰에 압수 수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 등에 근무 중인 사건관련자의 자발적인 진술이 이뤄지도록 조처돼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수단을 갖고 조사활동을 벌여서 '국가공권력이 개입한' 의문사 즉 국가테러리즘의 실상을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인 요식 절차로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가테러에 면죄부만 안겨주게 된다.

그리되면 반세기 전에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하여 부끄러운 현대사를 불러오고 후세인들로부터 두고두고 지탄을 받아온 사실에 못지않는 역사적 옹호와 문책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벌이도록 여야 정당과 정부는 법개정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1948년 8월 제헌국회는 반민법을 제정할 때 수 차례에 걸친 수정 끝에 거의 완벽한 법률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이승만 정권의 폭력행사로 반민특위가 좌초되고 말았지만 당시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역사적 책임감과 애국심에서 이 법률을 제정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던 것이다. 16대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정신으로 법률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유엔인권위원회의 지원문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는 1983년 알폰신 문민정부가 과거 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민주인사 3만여 명의 실종사건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직속 '전국실종자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소환권과 압수수색권, 기소권 등이 없어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1980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처음으로 5인으로 구성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을 설치하도록 결의하였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는 유엔주도의 진실위원회가 구성되어 장기간 내전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1999년에는 유엔인권소위원회가 토고에서의 초사법적 처형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국제조사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하여 토고정부가 이를 수락했었다. 유엔총회는 1992년에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유엔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다가 사망한 전경들은 국가 유공자로 대우받고 있는 터에 독재권력과 맞서 싸우다 실종되거나 의문사 당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가이성은 설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고 동시대인들은 시대정신을 갖지 못하는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될 것이다.

반민특위 좌절의 뼈아픈 사력(史歷)을 돌이키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협의로는 의문사 진실규명 작업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정직한 역사를 회복하는 정의의 실천운동인 것이다.

## ◆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우리대학교 인권평화센터는 1998년 6월 1일 연구소로 발족하였습니다. 탈냉전과 지구촌화시대의 보편적인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인권과 평화' 교육 및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소 발족 이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는 인권평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 평화 관련 강좌를 신설하였으며 여러 번의 심포지엄과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서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권과 평화'를 대학 특성화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대학의 모든 교육, 연구활동에 인권과 평화의 이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인권평화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권평화센터는 지구촌화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변화하는 인권과 평화의 개념을 재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과 평화 관련 연구활동과 조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각종 학술행사 개최, 인권과 평화 관련 저널 발간, 인권과 평화관련 단체의 네트워킹 구축, 각종 국제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교육교재를 발간하고, 인권과 평화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인 1998년에 한국대학 최초로 태어났으며, 인권평화 기초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을 이재정 총장이 겸직 하였습니다.

1999년 3월에 조희연 교수(사회과학부)가 2대 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999년 9월, 학교 기구개편에 따라 인권평화센터로 재출발하였습니다. 2000년 4월에는 3대 소장에 김동춘 교수(사회과학부)가 취임하였습니다.

■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태어난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 지구촌화 정보화 시대의 보편적 이념으로서 인권과 평화 연구 및 교육
- ▶ 성공회대학의 이념인 열림 나눔 섬김의 정신으로 국가와 사회, 교회의 발전에 기여
- ▶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 각종 캠페인 전개
- ▶ 인권과 평화에 기초한 대안적인 대학교육 실시
- ▶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 ▶ 인권 평화의 가치와 전공교육결합
- ▶ 지구촌화 시대의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교양 교육 실시
- ▶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 인권과 평화 관련 단체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